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형 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 형 재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10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해체공사장 등의 경우 용접·용단 작업 등 다양한 화재 발생 요인들이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에서 관련 사항을 알 수 없어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및 대응

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을 갖는 각각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도록 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